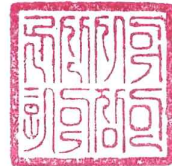


군산시 조례 제2258호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11. 27.)에서 재의결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4일

군산시의회 의장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시립예술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예술단의 기량 혁신을 도모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하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술단의 구성 및 직무(안 제2조~제3조)
 - 부단장(담당국장), 사무국 신설
- 단원의 구성 및 위촉, 정년 및 해고(안 제4조~제6조)
- 단원의 복무 및 정기평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2조)

- 징계의 종류 및 효력(안 제12조의2)
- 공연횟수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 입법예고 : 해당없음

군산시 조례 제2258호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군산시 시립예술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단의 구성) ① 군산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 단원, 사무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단장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단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예술단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예술단에는 교향악단과 합창단(이하 "각 예술단체"라 한다)을 두고 각 예술단체에 지휘자를 둔다.

④ 각 예술단체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향악단은 50명 이내의 단원과 지휘자로 구성한다.(단, 지휘자 및 비상임단원은 단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합창단은 40명 이내의 단원과 지휘자로 구성한다.(단, 지휘자 및 비상임단원은 단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직무)

-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고, 각 예술단체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과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감독하며 예술감독의 역할을 겸한다.
- ④ 사무국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사무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예술단 운영업무
 2. 공연기획 업무
 3. 홍보·마케팅 업무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술단의 사무업무
- ⑤ 지휘자의 유고가 있을 때는 합창단은 수석파트장이 교향악단은 악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단원 및 직원의 직책과 업무에 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 단원의 유고 시 업무분장에 의해 해당 임무를 부여한다.

제4조(단원의 구성 및 위촉)

- ① 단원을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 ②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 ③ 비상임단원은 예술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기간 위촉한 단원을 말한다.
- ④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의 채용·위촉은 전문적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은 원칙으로 하며, 채용·위촉 시 인원과 전형 방법을 공개하고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상임단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정기평정을 거쳐야 한다.

제4조의2(지휘자 등의 채용) 지휘자 및 사무국장과 직원의 채용은 전문적 지식이나 관련 경험 등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시 채용 인원과 전형방법을 공개하고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단원의 정년 등)

① 단원의 정년은 주민등록상 만 60세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원의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상반기 6월 30일 하반기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③ 상임단원의 근로기간은 정년이 보장하는 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정기평정을 거치지 않거나(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비상임단원의 근로기간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단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6조(단원의 해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정신질환 및 신체상의 장애 등에 의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복 가망이 없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람
5. 정기평정 결과 단원으로서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6.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7.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람
8.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7조(복무)

- ① 단원 및 직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단원 : 10:00 - 16:00(휴게시간 포함)
 2. 직원 : 09:00 - 18:00(휴게시간 포함)
- ② 상임단원의 입단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단장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③ 상임단원 및 직원은 예술단이 정하는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④ 상임단원은 군산시가 주최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 유료입장료를 받는 공연, 영리 목적을 가진 단체가 주최하는 공연 등에 출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 및 공익기관의 요청에 따른 공연, 비영리 목적의 공연, 교육 및 연구목적의 공연,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원을 공연 5일 전에 단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낙을 받고 출연할 수 있다.
- ⑤ 단원은 예술단 단원으로서 품위유지와 재능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 ⑥ 단장은 공연, 교육, 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원의 근무시간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

- ⑦ 상임단원의 지각·조퇴·외출 또는 무단 이석은 누계 5시간을 연가 1일 (직원의 경우는 8시간)로 공제하며, 결근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 ⑧ 단원의 주휴일과 공휴일 공연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무만 부여한다.

제8조(정기평정)

- 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12월 중에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얻어 정기평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정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70점 미만) 단원은 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1회 시 호봉승급제한, 연속 2회 시 감봉, 연속 3회 시 해고할 수 있다.
-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평정을 유예 또는 제외할 수 있다.
 - 1. 6개월 이상 휴직 중(공상 포함)인 단원
 - 2. 임신, 법정 출산휴가 및 공상휴가(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인정한 자)인 단원
 -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애사인 단원
- ④ 제3항의 사유로 정기평정할 수 없는 단원에 대해서는 정기평정 대신 다음 각호에 의거 별도의 수시평정을 실시한다.
 - 1. 수시평정은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별도 일정을 정하여 실시한다.
 - 2. 연주능력 평정은 지휘자와 외부위원 2명을 위촉하여 실시한다.
- ⑤ 연주능력 평정 시 외부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중 비공개로 선정한다.
- ⑥ 정기평정 평가는 악장, 단원, 직원을 구분하여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1. 단원 및 직원이 예술단 활동에서 기량향상과 사기증진을 목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포상 등을 받은 경우와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점수를 근무평정시 가·감산하

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가·감점은 근무평정 총점에 반영하여야 하며 가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⑦ 평정대상, 방법 및 기준 등 정기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⑧ 정기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7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단장은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9조(전형위원)

① 단원 및 직원 채용 시 전형과 정기평정 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체 및 사무국별 5명 이내로 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덕망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단원의 전형 및 평가 계획·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예술의전당관리과장과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와 예총회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2명과 시장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외부 당연직·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단장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공연계획
2. 단원 및 직원의 전형 및 정기평정 계획
3. 단원 및 직원의 실제 비용 보상액 결정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

제12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단원 및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3명, 시의회가 추천한 1명과 예술단이 추천한 1명, 시장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 4명을 포함한 민간위원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술단 업무 담당국장, 위원은 담당과장과 감사담당관, 단원이 속한 예술단체의 지휘자 또는 사무국장 1명으로 하고 간사는 예술단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 ④ 시의회와 예술단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또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한다.
- 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상의 의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기획·합동공연에 연 2회 이상 불참하는 사람
 3.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한 사람
 4. 업무 외의 사유로 사전 허가 없이 해외 여행기간을 1개월 초과한 자
 5.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예술단 자체 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6. 예술단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예술인으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떨어뜨린 사람
 7. 연(年) 3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무단 이석을 한 사람
 8. 공연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9. 그 밖의 폭력행위, 무고행위 등으로 단원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10. 정기평정 결과 단원으로서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⑦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를 따른다.

제12조의2(징계의 종류 및 효력)

- ① 징계는 해고·출연정지·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②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봉급의 10분의 1을 감한다.
- ④ 출연정지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출연정지 기간은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⑤ 징계처분에 따라 해고된 자는 3년 이내에 단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 ⑥ 단장은 내부갈등과 불화 발생 등 대내외적으로 각 예술단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개별 징계대상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한다)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경고를 하고,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단원 및 직원의 근무시간 조정

2. 출강 승인 취소 및 외부공연 출연 제한

3. 일부 공연 중지

⑦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고, 규칙으로 정한 비위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후원회)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순수한 재정지원을 위한 민간 주도의 후원회(재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공연)

① 예술단의 공연은 정기·기획·합동공연과 수시공연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기획공연은 각 예술단체 각각 연 6회 이상으로 하고, 합동 공연은 연 4회 이상(각 예술단체 각각 총 연 10회 이상)으로 하며, 수시공연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진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중 정기·기획·합동 공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입장료 징수)

① 예술단의 정기·기획·합동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하며, 입장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별지 제3호서식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별지 제4호서식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여 입장권 판매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징수된 입장료는 시세입으로 한다.

제16조(실비보상)

- ① 단원 및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 ② 초청출연자나 특별출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퇴직급여) 상임단원의 퇴직급여는 「공무원연금법」을 따르며,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20 년도 (20 . . . ~ 20 . . .) 군산시 시립예술단 상임단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단원으로서 공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제법규를 준수하여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창의와 성실로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1. 본인은 시장의 승인없이 전속단체 소관이외의 예술활동을 하지 않겠으며, 부득이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외부 출연하겠습니다.
- 2. 본인은 군산시 및 소속 예술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으며 단장 및 지휘자가 요구하는 훈련이나 공연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태만하여 지장을 초래한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 3.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 본인 소속 :
 주소 :
 성명 :

군 산 시 시 립 예 술 단 장 귀 하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명 기
연락처	063-450-5850

군산시 조례 제2259호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법 제9조제2항” 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6조” 로, “20분의 1로” 를 “30분의 1이상으로”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u>법 제9조제 2항</u>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u>20분의 1</u>로 한다.</p>	<p>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u>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u>」 제106조----- ----- <u>30분의 1이상으로</u>---</p>

군산시 조례 제2260호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⑫ 조촌동 관할구역에 구암동 일부지역을, 구암동 관할구역에 조촌동 일부 지역을 편입하며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7” 과 같다.

제2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⑫ 조촌동, 구암동의 관할구역 중 제1조 제12항에 따른 편입지역을 제외하 며, 제외되는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7” 과 같다.

별표 7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지번별 조서 부여 현황

(구암동 → 조촌동으로 편입)

연번	현재의 행정구역명	지 번	지 목	지적(m ²)	변경 후 지번	
	법정동명				법정동	지 번
	소 계	23필지		22,065.1		
1	구암동	520-10	구	7.00	조촌동	712-3
2	구암동	609-1	구	33.00	조촌동	712-4
3	구암동	608-1	도	59.00	조촌동	712-5
4	구암동	516-2	구	615.00	조촌동	712-6
5	구암동	516-4	대	115.00	조촌동	712-7
6	구암동	617	공	1,881.50	조촌동	3960-1
7	구암동	607-1	구	76.00	조촌동	712-8
8	구암동	324-27	구	930.00	조촌동	712-9
9	구암동	620	대	3,189.10	조촌동	3963-1
10	구암동	513-11	대	122.00	조촌동	712-12
11	구암동	514-2	잡	7.00	조촌동	712-10
12	구암동	513-2	잡	41.00	조촌동	712-11
13	구암동	618	도	294.40	조촌동	3946-1
14	구암동	320-4	장	55.00	조촌동	2-112
15	구암동	320-28	장	162.00	조촌동	2-115
16	구암동	321-18	대	28.00	조촌동	2-114
17	구암동	320-29	장	16.00	조촌동	2-117
18	구암동	321-19	대	135.00	조촌동	2-118
19	구암동	321-20	대	55.00	조촌동	2-116
20	구암동	321-21	대	18.00	조촌동	2-113
21	구암동	621	공	2,485.70	조촌동	3968-1
22	구암동	622	도	2,787.30	조촌동	3975-1
23	구암동	623	대	8,953.10	조촌동	3979-1

지번별 조서 부여 현황

(조촌동 → 구암동으로 편입)

연번	현재의 행정구역명	지 번	지 목	지적(m ²)	변경 후 지번	
	법정동명				법정동	지 번
	소 계	61필지		28,609		
1	조촌동	2-4	도	785.00	구암동	321-23
2	조촌동	648-1	도	479.00	구암동	321-22
3	조촌동	705-4	장	4.00	구암동	626
4	조촌동	706-8	구	18.00	구암동	624
5	조촌동	705-5	도	7.00	구암동	627
6	조촌동	634-5	도	207.00	구암동	629
7	조촌동	635-5	도	106.00	구암동	631
8	조촌동	635-9	도	39.00	구암동	632
9	조촌동	634-9	도	48.00	구암동	630
10	조촌동	633-11	대	13.00	구암동	406-18
11	조촌동	705-10	도	1.00	구암동	628
12	조촌동	706-11	구	3.00	구암동	625
13	조촌동	706-7	장	2.00	구암동	406-14
14	조촌동	705-7	장	1.00	구암동	406-16
15	조촌동	706-1	장	242.00	구암동	406-15
16	조촌동	705-1	장	131.00	구암동	406-17
17	조촌동	633	대	5,098.00	구암동	406-19
18	조촌동	629-2	장	2,182.00	구암동	406-20
19	조촌동	629-9	장	1.00	구암동	406-21
20	조촌동	629-12	장	6.00	구암동	406-22
21	조촌동	629-10	장	195.00	구암동	406-23
22	조촌동	629-8	대	18.00	구암동	633
23	조촌동	631-6	장	27.00	구암동	634
24	조촌동	631-11	장	106.00	구암동	406-25
25	조촌동	631-1	장	2,181.00	구암동	406-24
26	조촌동	631-5	대	1,156.00	구암동	406-29
27	조촌동	631-12	창	34.00	구암동	406-30
28	조촌동	631-7	답	34.00	구암동	635
29	조촌동	631-14	창	35.00	구암동	406-32
30	조촌동	631-9	창	385.00	구암동	406-31
31	조촌동	631-8	창	913.00	구암동	406-33
32	조촌동	631-10	창	224.00	구암동	406-34
33	조촌동	633-3	장	5,062.00	구암동	406-28
34	조촌동	706-5	장	4.00	구암동	406-26
35	조촌동	705-3	장	5.00	구암동	406-27

연번	현재의 행정구역명	지 번	지 목	지적(m ²)	변경 후 지번	
	법정동명				법정동	지 번
36	조촌동	706-10	구	12.00	구암동	406-37
37	조촌동	705-9	도	16.00	구암동	406-38
38	조촌동	633-1	구	407.00	구암동	406-39
39	조촌동	632-5	구	653.00	구암동	406-40
40	조촌동	706-2	구	21.00	구암동	406-43
41	조촌동	705-2	도	22.00	구암동	406-44
42	조촌동	633-12	도	361.00	구암동	406-45
43	조촌동	633-2	잡	497.00	구암동	406-46
44	조촌동	633-6	답	521.00	구암동	406-47
45	조촌동	633-14	도	6.00	구암동	406-49
46	조촌동	633-5	도	2.00	구암동	639
47	조촌동	633-9	답	9.00	구암동	638
48	조촌동	633-13	답	22.00	구암동	406-48
49	조촌동	632-3	구	24.00	구암동	406-42
50	조촌동	631-4	구	4.00	구암동	406-41
51	조촌동	632-4	구	4.00	구암동	637
52	조촌동	631-16	구	6.00	구암동	636
53	조촌동	631-15	창	19.00	구암동	406-36
54	조촌동	631-13	창	16.00	구암동	406-35
55	조촌동	631-2	구	532.00	구암동	641
56	조촌동	628-6	도	1,250.00	구암동	645
57	조촌동	630-3	도	1,250.00	구암동	644
58	조촌동	628-1	구	53.00	구암동	642
59	조촌동	629-1 (분할지)	구	961.00	구암동	640
60	조촌동	629-6 (분할지)	도	1,125.00	구암동	643
61	조촌동	2-3 (분할지)	도	1,064.00	구암동	646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 ⑪ (생략)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조촌동 관할구역에 구암동 일부 지역을, 구암동 관할구역에 조촌동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7” 과 같다.
제2조(관할구역의 제외) ① ~ ⑪ (생략)	제2조(관할구역의 제외) ①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조촌동, 구암동의 관할구역 중 제1조제12항에 따른 편입지역을 제외하며, 제외되는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7” 과 같다.

군산시 조례 제2261호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질병”을 “질병”으로, “장기간 임무를”을 “장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 내 이·통장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이·통장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통장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이·통장신분증 발급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상여금”을 “명절 상여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통장은 읍·면·동에서 개최하는 이·통장 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2.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구암동 8~9, 17~24”란을 “내흥동 8~9, 17~24”로 한다. 내흥동 25~28란 다음에 “29, 30, 31, 32”란을 신설한다. 구암동 동계 “28통 132반”을 “32통, 152반”으로 한다.

“비용도동 18” 란을 “소룡동 1” 란으로 이동하고 “오식도동 34” 란을 “비용도동 18” 란으로 이동한다. “오식도동 33란 중 5반 806의 1~4” 를 “806의1~2, 806의 4” 로 하고 “오식도동 34, 35, 36” 통을 증설한다.
소룡동 동계 “33통 131반” 을 “36통, 144반” 으로 한다.
동 총계 “512통 2,185반” 을 “519통, 2,218반”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복무) ① (생 략)</p> <p>② 이·통장은 제5조의 임무를 <u>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u></p> <p>③·④ (생 략)</p> <p><신 설></p>	<p>제6조(복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질병 ----- ----- 장 기간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 내 이·통장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이·통장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통장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이·통장 신분증 발급 규정」으로 정한다.</p>
<p>제10조(실비보상) ① (생 략)</p> <p>②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10조(실비보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명절 상여금-----.</p> <p>③ 이·통장은 읍·면·동에서 개최하는 이·통장 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사기진작) ①·② (생 략)</p> <p>③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 내 이·통장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이·통장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통장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이·통장신분증 발급 규정」으로 정한다.</p>	<p>제11조(사기진작) ①·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별표]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제2조와 관련)

1. 이·반의 명칭과 관할구역(현행과 같음)
2.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현행				개정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해망동 ~경암동			현행과 같음	해망동 ~경암동			현행과 같음
구암동	1~7		현행과 같음	구암동	1~7		현행과 같음
구암동	8~9		현행과 같음	내흥동	8~9		현행과 같음
구암동	10~16		현행과 같음	구암동	10~16		현행과 같음
구암동	17~24		현행과 같음	내흥동	17~24		현행과 같음
내흥동	25~28		현행과 같음	내흥동	25~28		현행과 같음
(신설)	-	-	-	내흥동	29	1	924 우미린센텀오션 아파트 101동
						2	924 우미린센텀오션 아파트 102동
						3	924 우미린센텀오션 아파트 103동
						4	924 우미린센텀오션 아파트 104동
					30	1	924 우미린센텀오션 아파트 105동
						2	924 우미린센텀오션 아파트 106동
						3	924 우미린센텀오션 아파트 107동
						4	924 우미린센텀오션 아파트 108동, 상가
					31	1	926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 101동 101호-203호
						2	926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 101동 104호-206호
						3	926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 102동 101호-203호
						4	926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 102동 104호-206호
						5	926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 103동 201호-203호
						6	926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 103동 204호-206호, 상가

						1	926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 104동 101호-208호
						2	926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 104동 104호-220호
					32	3	926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 105동 101호-208호
						4	926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 105동 104호-220호
						5	926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 106동 101호-208호
						6	926 한라비발디 센트로 아파트 106동 104호-220호
동계	28	132		동계	32	152	
개정동 ~미룡동			현행과 같음	개정동 ~미룡동			현행과 같음
소룡동	1	1	-	비응도동	1	1	비응도일원
소룡동	2~16		현행과 같음	소룡동	2~16		현행과 같음
오식도동	17	5	현행과 같음	오식도동	17	5	현행과 같음
비응도동	18	1	비응도일원	오식도동	18		
						1	626 ~ 628의17, 631 ~ 635의7
						2	629의2 ~ 629의12
						3	629의13~ 629의18,630의1 ~630의4, 636의4 ~ 640의6
						4	641 ~ 645의13, 652의1 ~ 653
						5	646의2 ~ 651의5 , 654 ~ 655
						6	849 ~ 884의10, 887 ~ 897, 904 ~ 1005
소룡동	19~32		현행과 같음	소룡동	19~32		현행과 같음
오식도동	33			오식도동	33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500의1~506, 509의1~515의 1, 701, 805의1~5, 806의1~4, 812~812의1			5	현행과 같음 806의1~2, 806의 4, 현행과 같음
오식도동	34			오식도동	34		
		1	626 ~ 628의17, 631 ~ 635의7			1	806의3 한성필 하우스 101동
		2	629의2~630의4,			2	806의3 한성필

			636의4 ~ 640의6				하우스 102동
		3	641 ~ 645의13, 652의1 ~ 653				
		4	646의2 ~ 651의 5, 654 ~ 655			3	806의3 한성필 하우스 103동
		5	849 ~ 884의10, 887 ~ 897, 904 ~ 1005			4	806의3 한성필 하우스 104동
(신설)	-	-	-		35	1	806의3 한성필 하우스 105동
						2	806의3 한성필 하우스 106동
						3	806의3 한성필 하우스 107동
						4	806의3 한성필 하우스 108동
(신설)	-	-	-		36	1	806의3 한성필 하우스 109동
						2	806의3 한성필 하우스 110동
						3	806의3 한성필 하우스 111동
						4	806의3 한성필 하우스 112동
동계	33	131			36	144	
산북동				산북동			현행과 같음
동총계	512	2,185			519	2,218	

□ 조례 개정안(조정 후)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소룡동	1	1	비응도일원	
	18	1	626 ~ 628의17, 631 ~ 635의7	
		2	629의2 ~ 629의12	
		3	629의13 ~ 629의18, 630의1 ~ 630의4, 636의4 ~ 640의6	
		4	641 ~ 645의13, 652의1 ~ 653	
		5	646의2 ~ 651의5, 654 ~ 655	
		6	849 ~ 884의10, 887 ~ 897, 904 ~ 1005	
	33	1	592의1 ~ 593의8, 596의1 ~ 604의5	
		2	594의1 ~ 595의5, 604의6 ~ 608의5	
		3	609의2 ~ 617의14, 622의1 ~ 623의16	
		4	618의1 ~ 621의6, 624의1 ~ 625의5	
		5	500의1 ~ 506, 509의1 ~ 515의1, 701, 805의1 ~ 5, 806의1 ~ 2, 806의 4, 812 ~ 812의1	
	34	1	806의3 한성필하우스 101동	
		2	806의3 한성필하우스 102동	
		3	806의3 한성필하우스 103동	
		4	806의3 한성필하우스 104동	
	35	1	806의3 한성필하우스 105동	
		2	806의3 한성필하우스 106동	
		3	806의3 한성필하우스 107동	
		4	806의3 한성필하우스 108동	
	36	1	806의3 한성필하우스 109동	
		2	806의3 한성필하우스 110동	
		3	806의3 한성필하우스 111동	
		4	806의3 한성필하우스 112동	
	통계	36	144	

군산시 조례 제2262호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유희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시민”이란 유희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희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유희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시장은 유희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공간, 사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개방공간 예약시스템에 공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사용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희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자
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기간) 유희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민이 유휴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사용) 시장은 유휴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 및 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교육
2.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시 단체 우선
3.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시 우선 신청 단체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유희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르며 사용자는 제13조에서 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희공간을 1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화재,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유희공간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반환, 사용일 2일전 90% 반환, 사용일 전일 80%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 3. 사용자가 유희공간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사용일 각각에 대해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사용자는 유희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유희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유희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사용료 (제12조 관련)

공간명	면 적	사 용 료		비 고
		기준시간	금액	
회의실, 강당 등	33㎡이하	2시간 (초과시간당)	10,000원 (5,000원)	◦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시설의 공간별로 요금을 정하여 별도 부과
	34~165㎡이하		20,000원 (10,000원)	
	166~330㎡이하		30,000원 (15,000원)	
	330㎡초과		40,000원 (20,000원)	

- ① 기준시간은 2시간으로, 기준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50%
- ②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 ③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 ④ 사용자의 주차장 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 ⑤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음

군산시 조례 제2263호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군산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전입금
2. 시유재산의 매각대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청사의 건립부지 매입비
2. 청사의 설계용역비, 감리비 및 건축비
3. 청사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4.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청사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1.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
2. 군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청사 건립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하며, 서기는 청사건립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하는 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 1. 기금운용관 : 청사건립 업무담당 과장
- 2. 기금출납원 : 청사건립 업무담당 계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조례 제2264호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를 “군산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를 “조례는 「지방자
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로, “선임·운
영 및 실비보상” 을 “선임 및 운영 등” 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검사위원 정수)” 를 “(위원의 정수 및 자격)” 으로 하
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 “검사위원” ” 을 “ “위원” ” 으로, “5명” 을
“7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이하 “의
회” 라 한다)의원은 검사위원” 을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위원”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은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④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3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중전의 제4조)의 제목 “(선임 및 위촉)”을 “(선임 방법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1항) 중 “**검사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위원은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조(중전의 제4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검사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외하고는 특정성별이 검사위원**”을 “**제외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으로, “**7을**”을 “**6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사위원이**”를 “**위원이**”로, “**폐회중일**”을 “**폐회 중일**”로, “**검사위원을**”을 “**위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검사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대표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대표위원 1명을 두되, 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 제목 “(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을 “(결산검사 및 검사의견서 제출)”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본문 중 “검사위원” 을 “위원” 으로, “이송 받” 을 “이송받”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위원” 을 “대표위원” 으로 한다.

- ①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을 따른다.

제7조제1항 중 “검사위원의” 를 “위원의” 로, “검사위원은” 을 “위원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위원(장)” 을 “대표위원” 으로 한다.

제8조 중 “검사위원” 을 “위원” 으로, “보조인원등” 을 “보조 인원 등” 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9조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10조) 중 “검사위원” 을 “시가 위원” 으로, “초래할” 을 “초래하였을” 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 중 “검사위원에게” 를 “위원에게” 로, “별표 2에서 정한” 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로, “지급하며” 를 “지급하

며,” 로, “**검사위원이**” 를 “**위원이**” 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검사위원의 해촉**)” 을 “(**위원의 해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위원**” 을 “**위원**” 으로, “**해촉**” 을 “**해촉하여야**”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군산시**” 를 “**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사위원**” 을 “**위원**” 으로, “**이를 해임**” 을 “**해임**” 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법은 「법」 제64조**” 를 “**방법은 법 제64조**”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검사위원**” 을 “**위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위원에 결원**” 을 “**결원**” 으로, “**즉시**” 를 “**지체없이 위원을**”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위원을 해촉**” 을 “**위원을 해촉하여야**” 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검사위원의 제재**)” 를 “(**위원의 제재**)”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사위원은**” 을 “**위원이**” 로, “**해임 된**” 을 “**해임된**” 으로,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을 “**위원으로 위촉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위원**” 을 “**위원**” 으로, “**초래하게 한 때**” 를 “**초래한 경우**” 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서식 중 “**[별표2]**” 를 “**[별표 2]**” 로 하고, 같은 서식 제목의 “**(제9조 관련)**” 을 “**(제10조 관련)**”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군산시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u>선임·운영 및 실비보상</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검사위원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u>검사위원</u>”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이 경우 군산시의회(이하 “<u>의회</u>”라 한다)의원은 <u>검사위원</u>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u>군산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 <u>선임 및 운영 등</u>----- -----.</p> <p>제2조(위원의 정수 및 자격) ① --- --- “<u>위원</u>” ----- --- 7명----- . ----- -- <u>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은 <u>위원</u> ----- ----.</p> <p>② <u>위원은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u></p> <p>③ <u>위원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u></p> <p>④ <u>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u></p>

제3조(자격) 검사위원은 군산시의 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신 설>

제4조(선임 및 위촉) <신 설>

<신 설>

① 의회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 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군산시 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②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삭 제>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선임 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군산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가 선임한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

----- 위원 -----

-----.

<삭 제>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별이 검사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으로 한다.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 1. 결산개요
- 2. 세입·세출의 결산

④ ----- 제3항-----
----- 위원-----

----- . -----
----- 제외
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
-- 6을 -----
----- .

<삭 제>

⑤ ----- 위원이 -----
----- 폐회 중일 -----
----- 위원을 -----
----- .

⑥ ----- 위원-----

----- .

제5조(대표위원) ①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대표위원 1명을 두되, 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신 설>

<신 설>

제6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신 설>

① 검사위원회는 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결산검사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회는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본회의에서의 답변) ① 의회

② 대표위원회는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결산검사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을 따른다.

② 위원-----
----- 이송받-----
----- . --

----- .

③ 대표위원-----

----- .

제7조(본회의에서의 답변) ① -----

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장)은 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공 및 협조) 시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 시장은 검사위원에게 실제로 결산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별표 2에서 정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며 의원을 제외한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답변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시장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위원의 -----
----- 위원은 -----
-----.

② 대표위원-----

-----.

제8조(자료제공 및 협조) ----- 위원-----
----- 보조인원 등-----
-----.

제10조(실비보상) --- 위원에게 ---

-----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 지급하며, -----
----- 위원이 -----
-----.

제9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시가 위원-----

----- 초래하였을 -----
-----.

제11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한다.

- 1. (생략)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및 군산시 시세를 체납한 때

3. (생략)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64조에 따른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2.·3. (생략)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을 해촉 한다.

제12조(검사위원의 제재) ① 검사위원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

위원-----

----- 해촉하여야 -----

-----.

1. (현행과 같음)

2. -----

----- 시 -----

3. (현행과 같음)

② ----- 위원-----

해임-----, ----- 방

법은 법 제64조-----.

1. 위원-----

-

2.·3. (현행과 같음)

③ -----

결원----- 지체

없이 위원을 -----.

④ ----- 위

원을 해촉하여야 -----

-----.

제12조(위원의 제재) ① 위원이 ---

----- 해임된 ---

----- 위원으로 위촉될 --

-----.

② --- 위원-----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한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신 설>

[별표2]

위원의 일비·여비 지급기준(제9조 관련)

초래한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2]

위원의 일비·여비 지급기준(제10조 관련)

군산시 조례 제2265호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복합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다수인관련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해당 민원 담당국장 및 감사담당관
2. 위촉직 위원: 군산시의회 의원 2명, 외부 법률전문가, 건축·토목·도시 계획·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회의 소집 시 위촉되어 회의종료와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열린민원과장과 주관부서의 장이 공동간사가 되며, 서기는 주관부서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6조(기능) ①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대책
2. 「군산시 민원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군산시 민원실무심의회에서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3. 소관 불분명한 복합 및 인·허가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의 지정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5.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조정해야 할 사항
6.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7. 주관부서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법령과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8. 기타 민원업무의 시책추진과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 제3호, 제8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민원조정 처리안건 및 내용을 작성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군산시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7조(위원회 소집 및 심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과를 수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에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 1.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 부여
-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 당사자를 출석시켜 설명 청취
- 3. 공익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상급기관에 개선·건의하도록 관련 부서에 권고
- 4. 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심의된 사안은 필요시 민원인 설득

제9조(심의자료 제출)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7조제1항의 위원회 소집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민원내용과 처리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안건심의 결정 통지 및 처리) ① 위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

의 심의의결서에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민원처리 주관부서에 송부한다.

② 시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용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 결과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수당)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수당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접수된 민원서류의 심의·조정에 관하여는 종전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요구서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기한
민원인 성명		주소	
처리 주무부서		관계 부서 관계 기관	
민원요지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 (부의사유)			
참고사항			

위와 같이 심의 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관·과·소장 (인, 서명)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자료

 민원개요

신청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민원요지				

 관련 법규 검토사항 및 의견

관련법규	관련부서검토		특기사항
	담당부서	검토의견	

 주관부서 종합의견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

결	서 기	간 사	위원장
재			

회의일시				장 소		
위원 참석	정 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민원명						
접수일자				접수번호		
민원인 성명				주 소		
민원요지						
회의내용						
회의결과						

[별지 제4호 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의안 번호			심의일자			
심 의 안 건						
심의 위원 의견	구 분	직 위	성 명	의 건		서 명
				가	부	
결정 사항	가 · 부					

[별지 제5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 한다.

심 의 안 건			
의 안 번 호	제 호	심의년월일	
안 건 명			

심 의 결 과						
심의 위원수	정원		참석		불참	
가결 위원수			부결 위원수			
심 의 결 과 (결정요지)						

년 월 일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 인

군산시 조례 제2266호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현장 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 평가를 위하여 공개모집 및 부서의 추천의 방법으로 지역 예술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③ 평가단 인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군산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관심이 크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평가단원으로 선발하되, 다양한 시민 참여를 위하여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한다.

④ 평가단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의 지원사업 수행에 대한 현장 준비사항 및 홍보 활동 평가
 2. 관람객 참여도 및 사업 목적의 적정성 평가
 3. 평가를 통한 개선사항 및 모범사례 발굴·제시
-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단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27조의2(현장 평가단 운영) ①</u> <u>시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u> <u>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u> <u>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평가를</u> <u>실시하여 다음 연도 평가에 반영</u> <u>할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현장 평가를 위하여</u> <u>공개모집 및 부서의 추천의 방법</u> <u>으로 지역 예술 시민평가단(이하</u> <u>“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u> <u>다.</u></p> <p><u>③ 평가단 인원은 30명 이내로</u> <u>구성하며, 군산시 지역 문화예술</u> <u>발전에 관심이 크고 객관적인 평</u> <u>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평가단</u> <u>원으로 선발하되, 다양한 시민</u> <u>참여를 위하여 성별 및 연령을</u> <u>고려한다.</u></p> <p><u>④ 평가단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u> <u>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u> <u>할 수 있다.</u></p> <p><u>1. 제25조제1항의 지원사업 수행</u> <u>에 대한 현장 준비사항 및 홍보</u> <u>활동 평가</u></p>

2. 관람객 참여도 및 사업 목적
의 적정성 평가

3. 평가를 통한 개선사항 및 모
범사례 발굴·제시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
단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산시 조례 제2267호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군산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시체육회 및 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시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체육인 인권헌장)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체육인 인권사업)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
4. 체육인 인권실태 조사
5. 체육인 인권교육과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매년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실적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체육 업무담당 부서, 시체육회, 전북특별자치

도군산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지도자, 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을 수행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인 인권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 체육인 인권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관협의체는 제2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기구 등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시설 요건
2. 신고·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
3. 그 밖에 시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0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① 시장은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단체 등에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안이 확인 또는 우려되는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체육인 인권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민간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조례 제2268호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시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

환경교육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군산시 환경교육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 2. 지역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 3. 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 4. 시책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
-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6. 시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책을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환경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 4. 체험형 환경교육의 활성화
- 5. 법 제12조에 따른 교원 등에 대한 지원
-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공공기관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교육 내용의 포함 권장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의 실시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7.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 지원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별표와 같다.

③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군산시 기초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환경교육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에게 자문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 수당 등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어린이집·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환경교육주간)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시민의 환경
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제7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된 설립 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다.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다음 각 목의 인력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 가.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常勤)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 나.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근 관리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3.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 가.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 시설과 장비를 확보할 것
 - 나.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사무실을 확보할 것

<별지 제1호서식>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환경교육센터 명칭	대표자		
	환경교육센터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예정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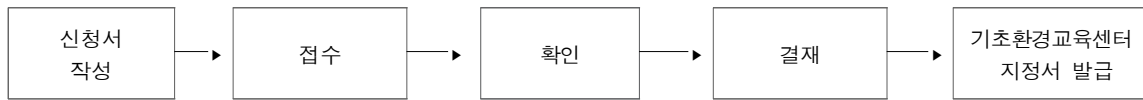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3.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실적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군산시청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서

-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지정기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직인

군산시 조례 제2269호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3호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을 “**종교집회장**” 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p> <p>1. ~ 2. (생략)</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u>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u>)</p> <p><신 설></p> <p>4. ~ 8. (생략)</p>	<p>[별표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p> <p>1. ~ 2. (현행과 같음)</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p> <p>4. <u>「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u></p> <p>5. ~ 9. (현행 4. ~ 8.과 같음)</p>

군산시 조례 제2270호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군산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운임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안전건설국장, 경로장애인과장, 교통행정과장, 군산시장장애인연합회 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산시의회 의원 2명
 2. 교통·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교수 및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 대중교통계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수당)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수당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3. 그 밖에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저상버스 운행 대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저상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사업자 및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 ①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 ②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으로서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교통약자의 이용 택시”라 한다)를 이용하는 데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신청 등) ①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및 교통약자의 이용 택시(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임산부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사람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 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서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 ⑥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⑨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되거나 변경된 이용대상자에 대해서 즉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계약 기간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 이용기간 등은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6조에 따른 이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군산시
2. 전북특별자치도 전 지역
3.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제1항에 따른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운행지역을 일시적으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시 관할구역 내 시내버스요금 이하
2.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및 교통약자의 이용 택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 가. 관내요금: 시 관할구역 내에서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시내버스요금의 2배
 - 나. 관외요금: 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다만, 도로통행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21조(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을 고려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표준

매뉴얼 및 복무규정 등을 위원회 심의 후 정할 수 있다.

제2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동지원센터는 영 제14조의6 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4조의6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1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영 제14조의5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전문성 확보가 가능한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한다.

⑥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⑧ 제3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 번호		결 재	접수자	결재권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이용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유 형	교통약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장애(장애 정도)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고령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생활형태	휠 체 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거주형태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	급여종류()	해당무	
	가족(동거인)수			명	보 조 인	있음	없음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군산시장(군산시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mm×297mm

[뒤쪽]

신청서 작성 안내

-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본인 확인 서류
 -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한 여부와 이용제한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445-11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본인은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
수 신 : ○○○ 귀하(○○동 ○○번지)

「군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승인/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용대상자와의 관계
이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교통약자 유 형	<input type="checkbox"/> 장애(장애 정도)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고령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차 량 유 형	<input type="checkbox"/> 특별교통수단 <input type="checkbox"/>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input type="checkbox"/> 교통약자의 이용 택시			
이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 정 사 유				

년 월 일

군산시장(군산시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장) (인)

210mm×297mm

군산시 규칙 제845호

군산시 공약사업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약사업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

군산시 공약사업 관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시장 공약사업 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장의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이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군산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을 구체화한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 및 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추진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추진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추진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③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업무담당 계장이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에 대하여 시장 취임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약사업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 초안이 작성되면 추진부서에서는 공약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또는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3. 투자소요액 및 연도별 자원조달 계획

4.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시장 취임 이후 100일 이내에 추진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시장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최종 확정하며,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그 결과를 추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추진부서의 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이 확정·통보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 시 추진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실천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3. 국가 및 전북자치도 계획과의 조화
4.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5.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일 경우 예산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6.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③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는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 실천계획의 총괄개요, 소요재원 및 조달 방안, 연차별 추진 계획 등 공약사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확정하여 추진부서 및 협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관리) ①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추진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추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①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의 확정 이후 정책변경,

재정여건 등의 변화로 부득이하게 실천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실천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이행평가단(이하 “이행평가단” 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하여 추진부서 및 협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행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행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이행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시민을 대상으로 공약사업 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③ 단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이행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⑥ 이행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천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자문 및 심의

2.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및 의견제시

⑦ 이행평가단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이행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한 18세 이상 시민으로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자체평가) ① 추진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이행실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반기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부진할 경우 해당 추진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이행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결과의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확정, 실천계획 수립·변경, 추진상황 및 공약사업 이행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매니페스토운동 협조)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규칙 제846호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폐지규칙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훈령 제443호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12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의 범위)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재난의 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재난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상황실은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과 상황근무자로 구성하고 상황실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맡는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건설국장이 상황실 총괄책임자로 상황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임무) 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상황실 업무 총괄 및 조정
2.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간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상황실, 행정안전부 등에 상황 보고 및 전파
4. 각종 재난상황 종합판단 및 초동조치 지휘
5.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체계 확립 및 유지
6. 재난안전정보시스템 등 상황실 시설·장비의 관리 총괄

② 상황실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상황의 접수, 전파, 보고
2. 재난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점검 및 유지보수
3.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4. 재난상황보고서 작성
5. 주요 재난상황 정보 파악 및 분석
6. 주요 재난 발생 시 관계부서 직원의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
7. 그 밖에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상황실 운영 및 근무

제5조(운영 등) ① 상황실은 연중 매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 상황실근무자는 재난안전상황관리를 위해 교대근무를 원칙으로하며, 전담인력으로 구성한다. 상황실장이 정원의 범위에서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시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 판단하는 경우

2. 명절, 연말연시, 연휴기간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상황근무자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상황실 근무반 편성) ① 상황실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 09:00 ~ 18:00, 야간근무 18:00 ~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 단, 전담반 구성 및 상황대응의 긴급성, 필요성에 따라 상황실장은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상황실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근무) ① 상황실근무자는 업무개시 20분 전에 출근하여 직전 상황실

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재난관리상황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근무명령은 상황실장이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발령한다.

③ 근무명령을 받은자가 출장, 휴가, 교육, 전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황실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 상황실장으로부터 근무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지휘 및 복무감독)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을 지휘·감독한다.

② 상황실장은 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안전건설국장을 보좌한다.

③ 상황실근무자에 대한 복무사항은 상황실장이 관장한다.

④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비상근무·행사차출 등 기타 근무에서 제외한다.

제9조(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 상황실장은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지체없이 계통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단체 및 관련 관·과·소 또는 유관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상황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에 해당하는 등 재난상황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재난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의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부서장 및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상황보고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기보고서 : 매일 1회 작성하는 재난안전 일일상황보고
- 2. 수시보고서 : 필요시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작성하는 상황보고

② 정기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수시보고서는 별지 제2

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작성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상황실장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상황보고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를 활용하되, 상황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PS-LTE), 서면, 구두, 전화, 팩스, 휴대전화문자메세지(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대체적 수단을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록유지 및 협조

제11조(기록유지) ① 상황실근무자는 새올시스템에 각 호의 내용을 입력하고 상황실장에게 결재를 득해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새올행정시스템)
2. 유관기관 연락사항 (새올행정시스템)
3. 재난상황 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② 상황실장은 재난상황보고, 근무수칙, 주요 재난관련 매뉴얼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유관기관 등과의 협조) ① 상황실장은 재난안전시스템의 관리를 총괄하며, 이를 위해 상황실에 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한 관리카드 및 관련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도 상황실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관계 기관의 비상연락망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13조(장비관리) ① 상황실장은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의 관리를 총괄하며, 이를 위해 상황실에 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한 관리카드 및 관련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안전시스템 및 영상회의 등 연계장비와 통신회선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복구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문서 및 장비보완)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 할 수 없다.

제15조(보안관리) 상황실장은 상황실근무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상황실 출입제한) 상황실장은 상황실근무자 및 재난안전 업무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상황실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 수 있다.

제 5 장 인사 및 후생복지 등

제17조(수당 등) ① 상황실근무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및 상황관련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황실근무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요건을 고려하여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근무환경 조성) 상황실의 근무환경은 상황실 근무자가 24시간 근무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항상 쾌적하게 조성되어야 한다.

제19조(결원보충)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상황실 업무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20조(근무기간) 상황실 전담근무자의 근무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정기보고서(제10조제2항 관련)

	<h2 style="border: 2px solid blue;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군산시 재난관리 일일상황</h2>		군 산 시 재 난 종 합 상 황 실
	- 0000. 00. 00. (0) 00:00 현재 -		
재난상황실	안전총괄과장 000(0000)	안전총괄계장 000(0000)	상황실 담당자 000(0000)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주간	야간

재난안전 및 기상현황

상황전파메신저

○


해경 보고서

○

유선 신고 및 재난안전통신망(PS-LTE) *통신망 세부 내역은 별도

○

기상상황보고

오늘 [00. 00(0)]				내일 [00. 00(0)]			
							
강수 확률	오전 0%	기 온	최저 0°C	강수 확률	오전 0%	기 온	최저 0°C
	오후 0%		최고 0°C		오후 0%		최고 0°C
전일	강수량 0mm	금일 (예상)	강수량 0mm	전일	강수량 0mm	누적 (00월) *조촌동 기준	강수량 0mm
	적설량 0cm		적설량 0cm		적설량 0cm		적설량 0cm
만조시각 (조수위)		풍 속 파 고		만조시각 (조수위)		풍 속 파 고	

■ [별지 제2호서식] 수시보고서(제10조제2항 관련)

재난 상황 보고서

즉시 보고 제 호

수 신 :

시행일시 :

접수일시:

발 신: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

(서명 또는 인)

제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화재 발생 보고**

1. 일 시 :

2. 장 소 :

3. 상황개요(사고 원인)

- 개 요 :

4. 피해상황

가. 인명피해 :

나. 재산피해 :

5. 응급조치 사항

가. 조치 사항

-
-
-
-
-
-

6. 현장사진

--	--

군산시 공고 제2024-2648 호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인센티브 지원기준이 타시군에 비해 복잡, 충족에 어려움
- 지원기준 완화로 여행사들의 단체방문객 군산유치 유도

2. 주요내용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지원기준을 간소화하여 군산시 관광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우 편)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전 화) 063-454-3307 Fax) 063-454-6020

(이메일) 5JUNESEOK@korea.kr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 담당 오준석 주무관 (전화 063-454-33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이용 또는 전통시장을 관광 코스로 운영 또는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관광 또는 군산시 농촌체험교육장 이용 중 한 가지 이상” 를 “관내에서 숙박하고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이용과 관내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관람하며(필수), , 관내 관광지 2개소 이상 관광 또는 전통시장을 관광코스로 운영 또는 군산시 농촌 체험교육장 이용 중 한 가지 이상(택 1)” 를 “관내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관광하며(필수), 전통시장을 관광코스로 운영 또는 군산시 농촌 체험교육장 이용 중 한 가지 이상(택 1)” 을 “관내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조건) ①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지원은 <u>관내 음식점 1회 이상 이용 또는 전통시장을 관광코스로 운영 또는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관광 또는 군산시 농촌 체험교육장 이용 중 한 가지 이상</u>을 충족시킨 조건을 말한다.</p> <p>②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에 정한 조건이란 <u>관내 음식점을 1회 이상 이용하고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관람하며(필수), 관내 관광지 2개소 이상 관광 또는 전통시장을 관광코스로 운영 또는 군산시 농촌 체험교육장 이용 중 한 가지 이상(택 1)</u>을 충족 시킨 조건을 말한다.</p> <p>③ 조례 제15조제1항제3호에 의한 지원은 <u>관내 음식점을 1회 이상 이용하고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관광하며(필수), 전통시장을 관광코스로 운영 또는 군산시 농촌체험교육장 이용 중 한 가지 이상(택 1)</u>을 충족시킨 조건을 말한다.</p>	<p>제5조(지원조건) ① ----- ----- <u>관내에서 숙박하고 관내 음식점 1회 이상과 관내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u> ----- ----- ----- -----.</p> <p>② ----- ----- ----- ----- ----- ----- ----- ----- -----</p> <p>③ ----- ----- ----- ----- ----- ----- ----- -----</p> <p>----- ----- ----- ----- ----- ----- ----- -----</p> <p>----- ----- ----- ----- ----- ----- ----- -----</p> <p>----- ----- ----- ----- ----- ----- ----- -----</p>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으로
추가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연락처	(063) 454 - 3320

군산시 고시 제2024-158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군경합동묘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21-202호(2021.12.2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군산시 고시 제2023-204호(2023.12.8.)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나운동 산17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군경합동묘지)사업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및 제88조,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나운동 산175번지 외 16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사업
 - 나. 명 칭 :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조성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변경)

[당초] 군경합동묘지 조성 1식(자연장지 및 편의시설 주차장 등), 부지면적 23,240m²

[변경] 군경합동묘지 조성 1식(자연장지 및 편의시설 주차장 등), 부지면적 23,151m²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주택행정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23. 12. 8. ~ 2024.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참조)

7. 도시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장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	군경합동 묘지	장사시설 (공동묘지)	나운동 산175번지 일원	23,240	감)89	23,151	군산시 고시 제2021-202호 ('21.12.31.)	감) 0.38%

2) 장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장사시설 (공동묘지)	· 면적 변경 · 지정)23,240㎡ → 변경)23,151㎡ (감 89㎡)	·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내 미매입 토지(나운동 산175-1번지) 제척

8. 관계도서 : 게재 생략

(관계도서(지형도면 포함)는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변경전	변경후	성명	주소		
1	군산시 나운동	1298-14	전	199	199	199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	군산시 나운동	1299-1	전	109	109	109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3	군산시 나운동	1299-2	전	122	122	12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4	군산시 나운동	1299-3	전	535	535	53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5	군산시 나운동	1300-2	구	113	56	56	국(농수산부)			
6	군산시 나운동	1300-3	답	555	555	55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변경전	변경후	성명	주소		
7	군산시 나운동	1300-4	대	14	14	1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8	군산시 나운동	1300-6	전	736	701	70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9	군산시 나운동	1300-9	대	13	13	1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0	군산시 나운동	1301-3	묘	36	36	36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1	군산시 나운동	1301-4	묘	31	31	31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2	군산시 나운동	1301-5	답	72	72	7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3	군산시 나운동	1302	답	380	380	380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4	군산시 나운동	1303-4	답	8	8	8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15	군산시 나운동	1498-7	답	844	1	1	국(농수산부)			
16	군산시 나운동	산175	임	59,513	17,142	17,142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	군산시 나운동	산175-1	임	89	89	-	한국전력공사			
17	군산시 나운동	산176-1	임	7,076	3,177	3,177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계	17필지			70,445	23,240	23,151				

군산시 고시 2024 - 159호

군산 더 해수온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군산시 소룡동 737번지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 『온천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군 산 시 장

1. 고시내용

1	명 칭	군산 더 해수온천 온천공보호구역
2	위 치	군산시 소룡동 737번지
3	면 적	1,960㎡
4	범 위	지형도면 참고
5	지정사유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공공적 이용증진

2. 지형도면 :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3.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23)에 비치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4-160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군 산 시 장

○ 고시내용: 폐지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별 도 칙 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063-454-398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2024. 12.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및 폐지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및 폐지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 로 명 주 소 고 시 내 역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건물번호폐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축동안길 19-5 (수송동)	-	20241209	건물 철거 확인	20100125	지명으로 방향성 도로명 부여	
2	건물번호폐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축동안길 19-3 (수송동)	-	20241209	건물 철거 확인	20100125	지명으로 방향성 도로명 부여	

군산시 고시 제2024-164호

군산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고시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6조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도로의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군 산 시 장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점	종점			
옥구읍	면도	수상선	옥구103 (기정)	수산리 160-1	상평리 319	3.50	-	변경없음
			옥구103 (변경)	수산리 160-1	상평리 319	3.50		
옥구읍	면도	선오선	옥구104 (기정)	오곡리 692-7	오곡리 116-2	2.30	-	변경없음
			옥구104 (변경)	오곡리 692-7	오곡리 116-2	2.30		
옥구읍	면도	상미선	옥구105 (기정)	상평리 348	선제리 1-11	4.20	-	변경없음
			옥구105 (변경)	상평리 348	선제리 1-11	4.20		
옥구읍	면도	철사선	옥구106 (기정)	어은리 1824-4	어은리 1783-7	1.00	-	변경없음
			옥구106 (변경)	어은리 1824-4	어은리 1783-7	1.00		
옥구읍	면도	수선선	옥구109 (기정)	수산리 444-29	선제리 254-27	4.00	-	도시계획도로로 통합
			- (폐지)	-	-	-		

군산시 공고 제2024-2596호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조촌동 2-26번지 일원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변경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3일

군 산 시 장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조촌동 2-26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사업
 - 2) 명 칭 :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 조성공사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65,379.5m²

1) 도로(19개 노선)(변경없음) : 47,851.8m²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결정	대로	2	4	30~33	보조간선도로	7,790 (475)	경암동 3호광장	여방리 10호광장	일반 도로	6광장	건고228 (‘86.5.23)	
시행	대로	2	4	30~33	보조간선도로	7,790 (475)	경암동 3호광장	여방리 10호광장	일반 도로	6광장	-	
결정	대로	3	48	25~31	보조간선도로	809 (326)	중로2-65	대로1-4 (조촌로)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대로	3	48	25~31	보조간선도로	809 (326)	중로2-65	대로1-4 (조촌로)	일반 도로	-	-	
결정	중로	1	119	23	집산도로	142 (142)	대로3-6	중로2-143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1	119	23	집산도로	142 (142)	대로3-6	중로2-143	일반 도로	-	-	
결정	중로	1	120	21~27	집산도로	526 (526)	중로2-143	대로2-4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1	120	21~27	집산도로	526 (526)	중로2-143	대로2-4	일반 도로	-	-	
결정	중로	2	142	15	집산도로	290 (120)	중로1-120	대로3-47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2	142	15	집산도로	290 (120)	중로1-120	대로3-47	일반 도로	-	-	
결정	중로	2	143	15~21.5	집산도로	846 (535)	중로2-65	대로1-4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2	143	15~21.5	집산도로	846 (535)	중로2-65	대로1-4	일반 도로	-	-	
결정	중로	2	144	15	집산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2	144	15	집산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일반 도로	-	-	

※ ()는 금회 실시계획인가 (2단계) 연장임

구 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중로	2	145	15	집산도로	79 (79)	중로1-119	중로3-76	일반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2	145	15	집산도로	79 (79)	중로1-119	중로3-76	일반도로	-	-	
결정	중로	2	146	15	집산도로	25 (25)	중로3-76	대로3-47	일반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2	146	15	집산도로	25 (25)	중로3-76	대로3-47	일반도로	-	-	
결정	중로	3	74	12	국지도로	49 (4)	중로2-142	문화시설 용지	일반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3	74	12	국지도로	49 (4)	중로2-142	문화시설 용지	일반도로	-	-	
결정	중로	3	75	12	국지도로	231 (163)	중로2-142	중로2-142	일반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3	75	12	국지도로	231 (163)	중로2-142	중로2-142	일반도로	-	-	
결정	중로	3	76	12	국지도로	597 (597)	중로2-145	중로2-145	일반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3	76	12	국지도로	597 (597)	중로2-145	중로2-145	일반도로	-	-	
결정	소로	3	774	6	특수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 전용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74	6	특수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 전용도로	-	-	
결정	소로	3	775	6	특수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 전용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75	6	특수도로	22 (22)	중로3-76	중로2-143	보행자 전용도로	-	-	
결정	소로	3	776	6	특수도로	29 (29)	공공공지33	중로3-76	보행자 전용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76	6	특수도로	29 (29)	공공공지33	중로3-76	보행자 전용도로	-	-	

※ ()는 금회 실시계획인가 (2단계) 연장임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소로	3	777	6	특수 도로	29 (29)	중로3-76	공공공지33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77	6	특수 도로	29 (29)	중로3-76	공공공지33	보행자 전용 도로	-	-	
결정	소로	3	778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78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	
결정	소로	3	779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79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	
결정	소로	3	780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소로	3	780	6	특수 도로	19 (19)	대로3-6	중로3-76	보행자 전용 도로	-	-	

※ ()는 금회 실시계획인가 (2단계) 연장임

2) 주차장(1개소)(변경없음) : 2012.3m²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결정	주차장	주차장89	조촌동 3966	2,012.3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주차장	주차장89	조촌동 3966	2,012.3	-	

3) 녹지(4개소)(변경없음) : 12,482m²(도로 중복결정 142m²)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결정	녹지	완충녹지109	조촌동(대2-4번)	2,595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녹지	완충녹지109	조촌동(대2-4번)	2,595	-	
결정	녹지	완충녹지110	조촌동(중2-65번)	3,971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녹지	완충녹지110	조촌동(중2-65번)	3,971	-	
결정	녹지	완충녹지111	조촌동(중2-65번)	1,878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녹지	완충녹지111	조촌동(중2-65번)	1,878	-	
결정	녹지	완충녹지112	조촌동(대3-6번)	4,038 (142)	군산고2014-141 (2014.12.26)	중복 결정
시행	녹지	완충녹지112	조촌동(대3-6번)	4,038 (142)	-	

※ ()는 중복결정 면적임

4) 공공공지(1개소)(변경없음) : 3,033.4m²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결정	공공공지	공공공지33	조촌동 3965	3,033.4	군산고2014-141 (2014.12.26)	
시행	공공공지	공공공지33	조촌동 3965	3,033.4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주소

- 페이퍼코리아(주) : 전북 군산시 외항로 1245(비응도동)
- (주)디오션시티쓰리 : 전북 군산시 조촌5길 32, 3층

2) 사업시행자 성명

- 페이퍼코리아(주), (주)디오션시티쓰리 대표 권육상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당 초]

- 1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19. 08. 31.
- 2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0. 04. 30.
- 3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2. 03. 31.
- 4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4. 12. 31.

[변 경]

- 1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19. 08. 31. (변경없음)
- 2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0. 04. 30. (변경없음)
- 3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2. 03. 31. (변경없음)
- 4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6. 12. 31. (변경)
- 5차분 : 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9. 12. 31. (변경)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4.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 : 상기 토지 및 공공시설물

5.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동별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조촌동	36-12	구	48.0	48.0	군산시	완충녹지112
조촌동	50-5	구	107.0	107.0	군산시	완충녹지112
조촌동	50-7	구	71.0	71.0	군산시	완충녹지112
조촌동	55-2	구	37.0	37.0	군산시	완충녹지112
조촌동	2-103	장	45	45.0	군산시	중로1-120
조촌동	2-24	장	2,350.0	2,350.0	코리아신타(주)	완충녹지109
조촌동	2-26	장	1,975.0	1,975.0	군산시	중로2-143
조촌동	2-87	장	23,414.0	19,656.0	군산시	대로2-4, 대로3-48, 중로1-120
조촌동	2-27	장	842.0	842.0	군산시	완충녹지110
조촌동	2-104	장	45	45.0	군산시	중로1-120
조촌동	2-100	장	62.0	62.0	군산시	완충녹지110
조촌동	2-29	장	570.0	570.0	군산시	완충녹지110, 대로3-48
조촌동	2-30	장	1,378.0	1,378.0	군산시	완충녹지111, 대로3-48, 중로2-143
조촌동	2-88	장	518.0	518.0	군산시	완충녹지111
조촌동	2-32	장	597.0	597.0	군산시	완충녹지112
조촌동	2-33	장	42,177.0	3,813.0	코리아신타(주)	중로2-142, 중로3-75
조촌동	3964	도	20,062.8	20,062.8	군산시	중로1-119, 중로1-120, 중로2-143, 중로2-144, 중로2-145, 중로2-146, 중로3-76, 소로3-774, 소로3-775, 소로3-776, 소로3-777, 소로3-778, 소로3-779, 소로3-780
조촌동	41-33	장	610.0	610.0	군산시	중로1-120
조촌동	41-34	장	1,592.0	1,592.0	군산시	중로1-119, 중로2-143
조촌동	3965	도	3,033.4	3,033.4	군산시	공공공지33
조촌동	3966	차	2,012.3	2,012.3	군산시	주차장89
조촌동	41-25	장	457.0	457.0	군산시	완충녹지112
조촌동	41-28	장	2,240.0	2,240.0	군산시	완충녹지112
조촌동	41-18	장	2.0	2.0	군산시	완충녹지112
조촌동	41-19	장	345.0	345.0	군산시	완충녹지112
조촌동	41-16	장	29.0	29.0	군산시	중로2-143
조촌동	41-22	장	57.0	57.0	군산시	완충녹지112
조촌동	57-1	구	1.0	1.0	군산시	완충녹지112
조촌동	57-3	구	3.0	3.0	군산시	완충녹지112
조촌동	704-5	도	5.0	5.0	군산시	완충녹지112
조촌동	2-92	장	27.0	27.0	군산시	완충녹지112
조촌동	36-14	구	20.0	20.0	군산시	완충녹지112
조촌동	55-3	구	19.0	19.0	군산시	완충녹지112
조촌동	704-8	도	2.0	2.0	국토교통부	완충녹지112
구암동	274-15	장	121.0	121.0	군산시	완충녹지110
구암동	274-12	장	2,345.0	2,345.0	군산시	완충녹지110
구암동	276-4	대	22.0	22.0	군산시	완충녹지110
구암동	276-27	대	1.0	1.0	군산시	완충녹지110
구암동	276-23	대	14.0	14.0	군산시	완충녹지110
구암동	320-28	장	162.0	162.0	코리아신타(주)	완충녹지109
구암동	321-18	대	28.0	28.0	페이퍼코리아(주)	완충녹지109
구암동	321-20	대	55.0	55.0	페이퍼코리아(주)	완충녹지109
합계			191,606.5	65,379.5 (142)	-	-

※()는 중복결정 면적임

군산시 공고 제 2024-25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의거 소유자가 신청한 토지이동 신청(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및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대위신청건에 대한 등기완료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군 산 시 장

1. 공고내용 : 지적공부 정리 등기완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백토로 *** 김천* 외 3건
3. 공고기간 : 2024. 12. 6. ~ 12. 19. (14일간)
4. 공고장소 : 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관리계(☎063-454-3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공시송달조서 1부. 끝.

군산시 공고 제2024-2677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변경)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변경)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군 산 시 장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암석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인명피해 및 재산의 손실 등의 우려가 높아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사면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민의견 수렴 주요내용

가. 행정예고 기간 : 2024. 12. 13. ~ 2025. 1. 2. (20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24. 12. 13. ~ 2025. 1. 2. (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s://www.gunsan.go.kr>) 및 게시판

라.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3. 의견제출

-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산시청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기한 : 2025년 1월 2일까지
-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63-454-3060)
- 라. 제출처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17(군산시청 안전총괄과)
- 마. 문의처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 ☎063)454-3864
- 바. 처리방향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대상지

구분	지구명	위 치	등급 및 규모			지정(변경)사유	관리기관
			유형	등급	면 적		
당초	소룡2	군산시 소룡동 1024-33번지 일원	붕괴 위험	D	A=6,721㎡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파 재산보호	군산시청
변경	소룡2	군산시 소룡동 1024-33번지 일원	붕괴 위험	D	A=7,070㎡	사면붕괴 및 유실 등 낙석영향범위의 존치가옥의 위험상존에 따른 지정면적 변경	군산시청

5.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소룡2	2021. ~ 2025.	6,408	지장물 철거 30동, 흙깎기 1,227㎡, 벌목 2,422㎡, 배수로 설치 L=244m, 낙석방지책 180경간 등

※ 사업시기, 사업예산, 사업내용은 예산(국·지방비)지원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기사항

-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7.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 가.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군산시 안전총괄과(자연재난계)와 협의하여야 함.

- 붙임 1.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 현황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붙임 1)

사업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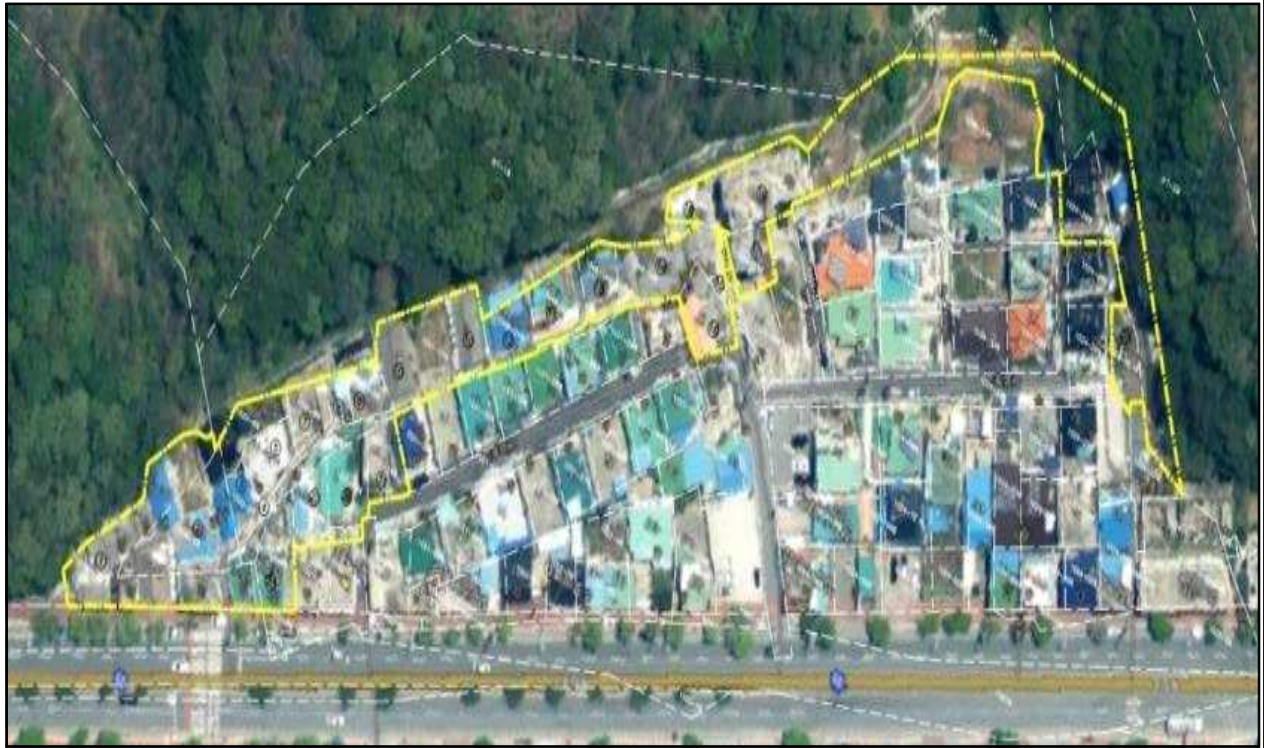


현장사진



변경 전 · 후

변경 전



변경 후



붙임 2)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군산시 공고 제2024 - 2678호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 지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군 산 시 장

1. 도로의 노선지정 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사유
				기점	종점			도로너비 (m)	포장너비 (m)	
서수면	리도	외무장선	서수 리도206호	서수면 축동리 770	서수면 축동리 636	1.043	축동리	7.5~10	6	농어촌도로 확·포장

2. 사업명 : 서수 리도 206호(외무장선) 도로확포장공사

3.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6. 12. 31.

4. 사업시행 : 군산시청 건설과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6. 지형도면도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 열람장소 : 군산시청 건설과 사무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063-454-3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조서(토지명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면	리	당초	분할 (편입)		당초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합 계(59필지)							15,126						
1	서수	축동	770	770	구	1,373.5	34	국(농림부)					
2	서수	축동	284-6	284-6	도	30	30	김*금	309				
3	서수	축동	283-2	283-2	제	873	139	국(농수산부)					
4	서수	축동	284-2	284-2	도	3	3	김장금	309				
5	서수	축동	283-1	283-10	유	3,147	772	국(농수산부)					
6	서수	축동	285-2	285-2	도	66	66	김해*선	293				
7	서수	축동	723	723	도	618	70	국(건설부)					
8	서수	축동	281-1	281-1	천	35	35	김*근	경성부 종로구 효제동				
9	서수	축동	281	281-3	천	2,874	201	김*근	경성부 종로구 효제동				
10	서수	축동	280-1	280-1	제	366	271	군산시					
11	서수	축동	280	280-5	답	1,128	316	노*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941 성북역신도브래뉴아파트				
12	서수	축동	724-2	724-2	구	3,702	75	국(농림부)					
13	서수	축동	279-5	279-5	제	210	156	군산시					
14	서수	축동	279-2	279-12	답	1,235	183	김*숙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면	리	당초	분할 (편입)		당초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5	서수	축동	279-4	279-4	제	64	55	군산시					
16	서수	축동	279-1	279-11	답	1,103	108	김*숙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17	서수	축동	277-4	277-4	제	542	339	군산시					
18	서수	축동	277-1	277-12	답	3,756	705	김*호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외무장길				
19	서수	축동	277-2	277-2	답	231	231	김*호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외무장길				
20	서수	축동	277-3	277-3	제	159	63	국(농수산부)					
21	서수	축동	266	266-4	답	632	185	김*호	미장동				
22	서수	축동	266-1	266-1	제	102	45	군산시					
23	서수	축동	267	267-4	답	980	388	조*하	익산군 성당면 부곡리				1/3
								조*하	익산군 웅포면 제성리				1/3
								조*호	익산군 용안면 덕용리				1/3
24	서수	축동	267-1	267-5	답	207	56	조*하	익산군 성당면 부곡리				1/3
								조*하	익산군 웅포면 제성리				1/3
								조*호	익산군 용안면 덕용리				1/3
25	서수	축동	268	268-3	답	4,298	336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빛가람동)				
26	서수	축동	268-1	268-1	제	29	29	군산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면	리	당초	분할 (편입)		당초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27	서수	축동	265-1	265-1	구	706	36	군산시					
28	서수	축동	724-5	724-5	구	1,437	370	국(농림부)					
29	서수	축동	258-5	258-17	답	3,337	1,120	서*자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외무장길				
30	서수	축동	258-14	258-18	답	382	239	서*자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31	서수	축동	730	730	도	464	12	국(건설부)					
32	서수	축동	261-7	261-7	구	161	4	군산시					
33	서수	축동	260	260-3	답	1,534	40	김*섭	서수리				1/3
								김*욱	서수리				1/3
								김*섭	서수리				1/3
34	서수	축동	724	724	구	4,168	107	국(농림부)					
35	서수	축동	244-2	244-22	답	4,274	1,455	김*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외무장길				
36	서수	축동	244-1	244-21	답	3,499	213	김*성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92 금호타운아파트				1/4
								김*수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304				1/4
								김*창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리2길 48. (구영지구푸르 지오1단지)				1/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면	리	당초	분할 (편입)		당초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서*자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외무 장길				1/4
37	서수	축동	244-14	244-14	답	94	94	군산시					
38	서수	축동	244-5	244-23	답	512	7	김*호	301				
39	서수	축동	238-1	238-6	답	4,215	1,069	한국농어촌공 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빛가람동)				
40	서수	축동	237-1	237-6	전	413	258	라*은	익산군 오산면 신지리				
41	서수	축동	237	237-5	전	370	77	라*은	익산군 오산면 신지리	나*선	대전 서구 괴정동	근저당권	
42	서수	축동	238-2	238-8	답	3,028	472	김*엽	1160				1/4
								김*일	옥구군 서수면 서수리 1160				1/4
								김*석	옥구군 서수면 서수리 639				1/4
								김*민	이리시 신동 743-22				1/4
43	서수	축동	산 141-10	산 141-17	임	1,455	21	고*규	군산시 경암동				
44	서수	축동	산145	산145-2	임	5,851	90	김*일	294				
45	서수	축동	산146-3	산146-5	임	902	107	전*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232번길11				3,30 9 /18, 04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자분)
	면	리	당초	분할 (편입)		당초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전*배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52, (오류동, 삼성아파트)				3,309 /18, 040
								전*배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광야2길				3,309 /18, 040
								전*배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3,309 /18, 040
								오*산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갈산길				4,804 /18, 040
46	서수	축동	643	643-2	답	4,003	690	천*복 외 1 인	전라북도 군산시 공포2로 20 군산디오션시티푸르지 오				1/2
								천*순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내무장길	군산농업협동 조합	군산시 번 영로	근저당권	1/2
								최*천	개정면 바 르메길	근저당권			
47	서수	축동	산147	산147-2	임	2,678	282	김*석	이리시 갈산동				1/3
								김*수	군산시 선양동				1/3
								김*수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292 휴먼시아				1/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면	리	당초	분할 (편입)		당초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48	서수	축동	729	729	도	2,013	1,077	국(건설부)					
49	서수	축동	642-1	642-8	답	1,388	396	김*호	466	김*창	서수면 축 동리	이전청구 권가등기	1/4
								김*호	서수면 축동리			1/4	
								김*일	서수면 축동리			1/4	
								김*호	서수면 축동리			1/4	
50	서수	축동	644	644-2	전	926	167	채*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 대동	서수농업협동조 합	서수면 서 수리	근저당권	3/9
								이*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 대동			2/9	
								이*양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 대동			2/9	
								이*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 대동			2/9	
51	서수	축동	642-2	642-9	답	460	87	천*순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내무장길	군산농업협동조 합	군산시 번 영로	근저당권	
52	서수	축동	642-3	642-10	구	268	47	이*석	임피면 읍내리				
53	서수	축동	산148	산148-2	임	10,90 9	83	김*석	이리시 갈산동				1/3
								김*수	군산시 선양동				1/3
								김*원	이리시 창인동 1가				1/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면	리	당초	분할 (편입)		당초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54	서수	축동	638-2	638-7	답	1,435	298	김*호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내무장길				
55	서수	축동	산149	산149-2	임	1,884	359	김*준	옥구군 서수면 서수리				1/3
								김*옥	옥구군 서수면 서수리				1/3
								김*각	서수면 서수리				1/3
56	서수	축동	638-1	638-1	답	283	47	군산시					
57	서수	축동	638	638-6	답	656	156	천*순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내무장길				
58	서수	축동	산150	산150-2	임	37,785	384	안동노씨상제 공파종중	옥구군 서수면 마룡리				
59	서수	축동	633-3	633-5	답	4,149	371	천*순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 면 내무장길	최*천	개정면 바 르메길	근저당권	

군산시 공고 제2024-2693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대로2-11호선 외 2개노선) 개설사업 공시송달 공고

코리아신타(주)에서 시행하는 군산시 지곡동 12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2-11호선 외 2개노선)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등에 의하여 군산시 고시 제2023-59호(2023.4.21.)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받은 사업으로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를 송부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손실보상 협의가 불가능한 토지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군 산 시 장

- 1.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1호선 외 2개노선)사업
[지곡동 126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
- 2. 사업 위치 : 군산시 지곡동 126번지 일원
- 3. 사업시행자 : 코리아신타(주) 대표 이유청
- 4. 공시송달내역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군산시 지곡동	64-35	답	49	박춘원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32-2 신일강변아파트 105동 606호			
					김경원	군산시 지곡동 158-1 은파코아루아 파트 102동 801호			

					이두철	군산시 나운동 155-5 대우아파트 102동 702호			
					최웅기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69(효자 동3가)			
2	군산시 지곡동	132-54	답	5	정만숙	군산시 중앙로 76-13(중앙로3가)	서대전농협	대전 중구 계백로 1573	
					정만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2길 6			
3	군산시 지곡동	132-55	답	171	정만숙	군산시 중앙로 76-13(중앙로3가)	서대전농협	대전 중구 계백로 1573	
					정만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2길 6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4	군산시 지곡동	132-61	답	48	박영숙	익산시 부송동 216-6 (부송동 오뚜그란데 904-1102)			
5	군산시 지곡동	132-62	답	32	(유)포스트 산업개발	군산시 오죽5길 21, 401호(오식도 동, 센트럴프라자)	장계농협	장수군 장계면 한들로 114	
6	군산시 지곡동	132-63	답	34	(유)포스트 산업개발	군산시 오죽5길 21, 401호(오식도 동, 센트럴프라자)	한국양봉농협	서울 중구 다산로 178	
7	군산시 지곡동	132-64	답	67	(유)메가엠	군산시 나운2길 5, 302호 (나운동 군산더빌딩)	한국양봉농협	서울 중구 다산로 178	
8	군산시 지곡동	132-65	답	27	(유)포스트 산업개발	군산시 오죽5길 21, 401호(오식도 동, 센트럴프라자)	장계농협	장수군 장계면 한들로 114	
9	군산시 지곡동	136-11	답	24	(유)메가엠	군산시 나운2길 5, 302호 (나운동 군산더빌딩)	전주원예농협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83	
							백산농협	김제시 백산면 학당길 26 1층	
10	군산시 지곡동	136-12	답	3	(유)메가엠	군산시 나운2길 5, 302호 (나운동 군산더빌딩)	전주원예농협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83	
							백산농협	김제시 백산면 학당길 26 1층	
11	군산시 지곡동	64-36	구거	59	한국 농어촌공사				

5. 공고기간 : 2024. 12. 16. ~ 2024. 12. 31.(15일간)

6. 공고사유 및 대상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해당 공고로 통지를 갈음(대상은 상기 내역 참조)

7. 보상 협의에 관한 사항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 063)454-3532

- 협의기간 및 방법 : 2024. 12. 16. ~ 2025. 1. 16일까지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는 토지소유자 분은 기간 내 협의장소로 연락바랍니다.

- 협의장소 : 군산시 지곡동 한라비발디 더프라임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소(2층)
(군산시 지곡동 126번지, ☎063-910-8534, 010-7627-3909)

- 보상시기, 방법 및 금액 : 손실보상 협의 요청시 보상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소유권 이전등기 후 청구에 따라 개별통지된 보상금 지급
- 보상절차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등 제반사항은 개별통지문 참조 및 상기 협의 장소로 문의

8. 기 타 :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는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